

한온시스템주식회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감사위원회 규정의 목적은 감사위원회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제2장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제2조 (감사위원회 구성)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상법 제382조 3항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조 (감사위원 선임 등)

- 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감사위원은 상법에 따른 이사의 임기를 준용하며,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 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감사위원회 운영

제5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본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위원회 활동)

- ①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가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에게 감사위원회 회의참석 및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감사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2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⑧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⑨ 감사위원회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위원회 평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활동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제8조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책임과 권한

제9조 (직무와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태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 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정관이나 법률이 규정한 사항 혹은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0조 (재무보고)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안한 회계원칙 및 관행과 감사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한지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내부신고)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내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를 운영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가 없도록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제12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 년도 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제13조 (외부감사인 선임)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감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외부감사 결과 검토)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반영한다.

제6장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16조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 ① 감사위원회는 회계 정책 및 추정 등의 변경에 관한 항목과 외부감사 과정의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의무를 가지며, 상법 제 44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한다. 감사위원회는 대표집행임원에게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회의일보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회의안건을 검토하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회의안건이나 문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제17조 (내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내부감사 진행현황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 ①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의 평가 및 임면 시 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2019.1.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3.2.13)

이 규정은 2023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